Kamtec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최종 제·개정일	2026. 07. 22
개정 차수	2
문서 관리팀	프로세스운영팀

캄텍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근



1. 목적

캄텍은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본 규범을 제정합니다. 캄텍 협력사 행동규범은 협력사들이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 준수와 더불어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및 경영시스템에 있어 최선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제시합니다. 협력사들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기업의 가치 증대, 지속가능경영 및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캄텍은 필요에 따라 본 규범을 변경할 수 있으며, 캄텍 또는 캄텍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협력사 실사 후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Drive Sustainability 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 (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 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OECD Guideline과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조하였습니다.

2. 범위

본 행동규범은 캄텍과 모든 형태의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본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자사와 거래하는 하위업체(Tier 1)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이해관계자가 본 행동규범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준을 수립·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협력사는 해당 표준이 공급망 전반에 적용되도록 관리·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에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캄텍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 캄텍오토 루마니아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 장가항 캄텍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 캄텍오토 USA 임직원 및 사내 협력사
- 캄텍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및 협력사 등)
- 기타 공급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및 비즈니스 관계자

3. 협력사의 책임 범위

캄텍 또는 캄텍이 지정한 제3자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및 실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캄텍은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 활동은 협의를 통해 수립 및 시행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력사는 공급망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윤리

4-1 투명 경영 및 반부패

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됩니다.

4-2 이해상충 방지

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 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 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4-3 공정 경쟁 및 반독점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는 공정거래, 반독점, 경쟁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③ 협력사는 상품·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협정·담합 행위를 금합니다.

④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제3자의 기밀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으며, 부정하게 획득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⑤ 협력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반독점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예: 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에 대해 내부 통제와 예방 절차를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4-4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하고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5 수출제한 준수

①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됩니다.

③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캄텍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4-6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및 지적재산 보호

① 협력사는 고객사, 거래업체 및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 기밀정보 및 보안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무단 접근·열람·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회사의 사전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이버 보안 체계와 물리적 보안 장치를 포함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구축·유지하여 데이터의 무단 접근, 손실, 파괴, 변경 및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협력사 본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침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개인정보를 법령과 계약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보관·파기해야 하며,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의 변경 시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모든 법령, 규정 및 국제 표준(예: GDPR,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4-7 책임있는 자재 구매

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 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 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8 조세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납세 의무를 인식하고, 해당 국가의 조세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세무 신고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세무당국에서 조사 요청 및 정보 요구 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4-9 재정적 책임 및 자금 세탁 방지

협력사의 회계 담당 임직원은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기록을 작성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행위는 탈세와 같은 범죄 행위의 결과로 국가별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국제적인 의무를 적용 받습니다. 협력사는 자금 세탁을 촉진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도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었는지 검토 및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4-10 문서화 및 기록

협력사는 각종 규제 준수와 회사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은폐, 허위 등의 포함하지 않은 문서를 작성, 유지해야 합니다.

4-11 정보 공개

협력사는 기업 활동,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 등의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 고객사, 투자자 등에서 정보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환경

5-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 · 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5-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기적으로 측정·기록·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고효율 설비 도입 및 공정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예: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사용을 확대하고, 관련 투자 및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탈탄소화를 위해 장기적인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학 기반 감축 목표(SBT)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목표와 이행 방안을 검토·적용해야 합니다.

⑤ 협력사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5-3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물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용수 저감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양질의 용수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수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야 합니다.

① 용수 재활용

협력사는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용수를 아껴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 하는 3R(Reduce, Reuse, Recycle)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② 용수 모니터링

협력사는 사업장 내 용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용수 사용량, 재사용량, 오폐수 방류량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5-4 환경오염물질 관리

협력사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 및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에 기반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 및 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① 대기오염물질

협력사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Dust)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법적 허용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투자 및 신기술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② 수질오염물질

협력사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법적 허용치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③ 토양 품질 관리

협력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저장·폐기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

를 시행하며, 사업장 토양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오염 발생 시 복원 조치를 신속히 수행해야 합니다.

④ 소음 관리

협력사는 사업장 가동 및 운송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발생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법적 기준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방음·방진 시설을 도입하며, 인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5-5 폐기물 관리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 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6 책임있는 화학물질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행한 물질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7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확산

① 협력사는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소재 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협력사의 기술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 및 제품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8 원부자재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천연자

원 및 생태계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급망 전반에서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조달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① 원부자재 사용 효율화

협력사는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공정의 최적화와 사업전략, 생산일정, 재고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생산을 통해 원부자재 투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② 폐기물 재투입 및 재활용

협력사는 원부자재 투입 후 발생하는 철, 알루미늄 등 금속류 폐기물, 폐목재 및 폐지 등 기타 폐기물 및 부산물 등은 자체 생산공정에 재투입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외부시설로 이관 및 판매하는 등 가급적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지속가능한 조달

협력사는 원부자재의 생산지를 점검하여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되거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원부자재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생산지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훼손, 불법 벌채 등 환경 파괴적 조달을 배제하며, 상당한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④ 생물다양성 보호

협력사는 원부자재 구매/조달 등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 전반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서식지 훼손 방지, 복원 활동 등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⑤ 토지 이용 및 삼림 벌채 방지

협력사는 사업 및 공급망에서 토지 이용·개발 과정이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고, 산림 벌채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⑥ 동물 복지

협력사는 사업 및 공급망 전반에서 동물유래 원부자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제 기준(예: 5대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된 동물복지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불필요한 동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동물성 소재, 동물실험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합니다.

5-9 지역사회 환경 책임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업 운영 전반이 환경과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지역사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환경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보전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환경 교육 및 봉사활동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환경 재난 발생 시 지역사회 복구·지원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6. 노동/인권

6-1 차별 금지 및 윤리적 채용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②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협력사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아동노동, 채용 수수료·알선비용 요구를 금지하며, 모든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 선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차별을 배제하고, 지원자에게 직무, 근로조건, 권리·의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6-2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3 근로시간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6-4 인도적 대우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적인 기준 및 UN 세계 인권 선언(UDHR) 등에 따라 기업의 사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협력사, 고객, 동료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6-5 결사의 자유 보장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 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 부재 시 개별 임직원이 교섭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하도록 합니다.

6-6 아동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 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아동 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7 강제노동 금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8 괴롭힘 금지

① 협력사는 임직원간 발생할 수 있는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성희롱, 성적 학대, 폭력, 폭언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 및 신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② 임직원은 존중과 신뢰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9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① 협력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며, 특히 소수민족, 원주민 및 취약계층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 언어, 전통 관습을 존중하며, 사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와 동의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토지·산림·수자원 등 천연자원의 이용에 있어 법적·윤리적 권리를 존중하며, 해당 자원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생활 및 생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 퇴거, 불법 점유, 무단 훼손을 방지하고, 모든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와 보상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아동·이주근로자·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개인을 차별 없이 대우하며, 성별, 임신·출산·육아 여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안전·보건·거주의 자유, 생계권, 경력 개발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6-10 다양성 및 포용성

「다양성」은 문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능력 등 임직원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모든 임직원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조직 구성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① 협력사는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여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합니다.

②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협력사는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⑤ 협력사는 임직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그룹을 마련합니다.

⑥ 협력사는 특정 임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를 이유로 그들을 회사에서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아니 합니다.

⑦ 협력사는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 국적, 인종의 임직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임을 인식합니다.

⑧ 협력사는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임직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⑨ 협력사는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능력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도입합니다.

⑩ 협력사는 인공지능·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채용, 평가, 교육 과정에서 성별, 인종, 연령,

장애, 종교, 출신 국가 등 개인적 특성에 따른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검증 절차를 운영합니다.

6-11 형평성

「형평성」은 임직원이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채용,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준수합니다.

① 협력사는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아니 합니다.

② 협력사는 회사, 계열사, 공급·협력업체에서 양성평등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며, 모든 임직원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채용, 승진, 보상,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④ 협력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별 기반 폭력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

⑤ 협력사는 가치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⑥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⑦ 협력사는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합니다.

⑧ 협력사는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학력에 따른 편견 없이 타인을 대우합니다.

6-12 민간 및 공안군 사용 시 인권 보호

협력사는 사업장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민간 경비 인력 또는 공안군을 사용할 경우, 국제인권기준(UN 인권지침, Voluntary Principles 등)을 준수합니다. 모든 경비 활동은 합법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며, 인권을 존중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합니다. 무력 사용은 법률에 근거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7. 안전/보건

7-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 · 유지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7-2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 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7-3 비상상황 대응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비상상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비상상활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 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4 사고 관리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직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5 안전 진단

①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 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기구/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 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6 보건 관리

①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 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8. 경영시스템

8-1 기업 성명서 공시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 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 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8-2 담당자 선임

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 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8-3 리스크 점검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8-4 교육 및 소통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 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8-5 정보 관리

①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6 고충처리 제도 운영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8-7 공급망 관리

①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에게 당사의 협력사 행동규범 또는 이에 준하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거래업체 (하위 협력사)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8-8 규범 준수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캄텍 또는 캄텍이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 점검 또는 현장 방문시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 및 관리 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 점검 혹은 현장방문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9. 제,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용	비고
0	2025. 05. 16	최초 제정	-
1	2025. 08 13	2(적용 대상), 4-3(공정 경쟁 및 반독점), 4-6(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및 지적재산 보호), 4-9(재정적 책임 및 자금 세탁 방지), 5-2(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5-3(수자원 관리), 5-4(환경오염물질 관리), 5-6(책임있는 화학물질 관리), 5-7(친환경 기술 개발 및 확산), 6-1(차별 금지 및 윤리적 채용), 6-4(인도적 대우), 8-7(공급망 관리) 내용 수정 5-8(원부자재), 5-9(지역사회 환경 책임), 6-9(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인권 보호), 6-10(다양성 및 포용성), 6-11(형평성), 6-12(민간 및 공안군 사용 시 인권 보호) 내용 추가	-
2	2026. 07. 22	2. 범위 내용 수정	-